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 방법 및 계약기간)

가.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 하거나 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는 자녀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다. 계약기간 만료 시 서비스 제공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재계약 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있는 경우 센터의 직원회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라. 계약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계약의 목적)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책임과 의무를 정함과 함께 이용절차, 이용 수칙, 사고대비, 책임성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 방문 요양, 목욕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목욕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법 법령에 규정한 본인 일부 부담금에 따라 비용 부담액을 청구한다.

나. 일반 대상자 또는 노인 장기요양 급여 이외의 시간을 이용할 경우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금액을 청구한다.

다. 장기요양 급여 부분 이외의 급여제공에 대해 보호자와 요양요원의 합의로 초과 근무 또는 차량을 이용한 경우 임의계약으로 보고 센터가 개입하지 아니하고, 보호자가 직접 요양요원에게 비용을 지급한다. (보호자가 센터 개입을 요청 할 경우 예외로 한다.)

라. 비용은 재가 장기요양 급여 기준표에 따른다.

마.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에 정산하고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에게 12일까지 별지 제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내역서를 통보한다.

바. 이용자는 매월 이용료를 기관에서 지정한 통장으로 이용 월 다음달 15일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해당 월의 마지막 날까지 미납부 시 다음 달 비용과 합산하여 안내 및 납부를 독려한다.

사. 기관은 이용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장기요양 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연말에 국세청 홈텍스 통보한다.)

이용료 미납 시 1차 미납금 독촉 통보하며, 그 후로 1주일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모든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아. 이용료는 통장계좌 입금 또는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모든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자.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 시킨 후 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을 발부한다.

차. 이용료가 과도하게 청구되어 입금된 경우 입금과 통일한 통장으로 환급하며, 이를 납부자에게 유선으로 통보 한다.

(신원 인수인의 의무 및 권리) 서비스 이용자 보호자(갑)와 서비스 제공자(을)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 계약서를 체결한다.

가.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1. 서비스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등 서비스 이용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서비스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서비스 이용자가 신변이상 시 주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가 있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서비스 제공 기관의 의무

1. 급여 계약 내용 범위 준수
2. 급여 제공 중 이용자 신병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 인수인(보호자)에게 통보
3. 급여 제공 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 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에 대한 비밀 유지
5.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보 제공
6.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보호 준수
7. 기타 이용자 또는 신원 인수인(보호자)의 정당한 요청에 협조

다.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1. 서비스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서비스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서비스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서비스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6. 기관의 의무는 신원 인수인(보호자)의 권리로 포함 된다.

제13조 (계약의 해제)

가. 이용자(또는 신원 인수인)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신원 인수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요양 급여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해제 방법)

가. 이용자(또는 신원 인수인)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 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나. 기관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신원 인수인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거나 요양 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대상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 변경된 비용은 문서로 안내하며, 보호자 동의하에 실행 한다.

제16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가. 서비스 내용

1. 요양 -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 정서지원, 신체기능유지증진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2. 목욕 - 방문목욕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거나, 수급자의 가정에 설치 되어있는 목욕설비를 이용하여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나. 비용의 부담 -이용자는 보건 복지부에서 고시한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중 본인 일부 부담 비율을 부담하여야 한다.

구 분	재가급여
건강보험료 순위 50% 초과자	15%
건강보험료 순위 25~50%	9%
건강보험료 순위 0~25%	6%
기초수급권자	0%

2026년 재가 장기요양 수가 계산표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 2026년 1월1일부터 적용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2,512,900 (240분35회)	2,331,200 240분(33회)	1,528,200 (180분26회)	1,409,700 (180분24회)	1,208,900 (180분 21회)

이용횟수는 평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공휴일 이용 시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7,450	150분 이상	50,640
60분 이상	25,320	180분 이상	57,020
90분 이상	34,120	210분 이상	63,530
120분 이상	43,430	240분 이상	70,080

⌘ 방문목욕

방문목욕	60분 (가정내 목욕)	50,10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8,99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80,230

다정방문요양센터